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관리 강화 등 〉
■ 조승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759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관리 강화	3
2.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제재 추가	13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승래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5. 7. 25.

다. 회 부 일 : 2025. 7. 28.

II.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 관련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수행할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대리인 제도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는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규정이 부재하여 해외 사업자가 제3의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국내대리인으로서의 정당한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내대리인 지정 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본사의 관리·감독 의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시정명령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와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 있거나 임원 구성, 사업 운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2항).
- 나.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3항 신설).
-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1조의2제7항 신설).
- 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7항 및 제10항 등).
- 마. 국내대리인을 지정,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

IV. 검토의견

1.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관리 강화

가. 개정안 요지

- 해외게임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을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게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31조의2제2항 등).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생략)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u><후단 신설></u> <u><신설></u> <u><신설></u>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u> <u>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u> <u>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u>

<신 설>

③ ~ ⑤ (생 략)

<신 설>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생 략)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

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
내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
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
독을 하여야 한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항까지와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
물 관련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에 해당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
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게
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게임물 관
련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
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⑧·⑨ (생략)

<신 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
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
르지 아니한 경우

3. 제10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⑧·⑨ (현행과 같음)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
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
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
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
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⑪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
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항
부터 제9항까지에 따른 시정권
고나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
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과태료) ① 제31조의2제1
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
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
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
할 수 있다.

⑪ -----제10항까지에-----

-----.

⑫ -----

-----제10항까지에-----

-----.

1. ~ 3.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4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4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

<u><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 략) <u><신 설></u> 7의2. (생 략) 8. (생 략) ③ (생 략)	<u>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u> 2. <u>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자</u> ② ----- ----- -----. 1. ~ 7. (현행과 같음) 7의2. <u>제31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u> 7의3. (현행 제7호의2와 같음) 8.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 제31조의2¹⁾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배급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2항에 따른 보고의 이행

2. 제33조에 따른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작성하는 약관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업자 및 게임제공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게임물 관련 표시 의무, 사후관리에 따른 보고 등의 업무를 대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게임이용자 피해, 국내게임사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4. 10. 22. 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2025. 10. 23.부터 시행됨.

<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개요 >

(지정 대상)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자. 다만, 게임물관련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는 제외

(지정 요건) 국내 주소 또는 영업장 있는 자

(지정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시행령 규정>

- ①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 ② 전년도 일평균 다운로드 1,000건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 ③ 기타 사항에 대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체부 장관이 인정한 자

(대리인의 의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사행행위예의 이용 방지·사행성 조장 방지 등에 관한 보고의 이행,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의 이행

(제재 방안) 지정의무 위반 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장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개정안은 해외게임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우선 지정하게 하고, 해외 본사에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시정권고·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외 게임사의 형식적 대리인 지정 문제를 방지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도 해외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제도 보완을 통한 실효성을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다만 개정안 조문별로 다음과 같이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음.
- 먼저, 현행법에서는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으로 국내 소재만을 규정하고 있어 형식적 지정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 제31조의2 후단은 해외게임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부실지정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유사하게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²⁾에서도 국내 법인이

2)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법인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임을 명시하고 있음. 이를 참고하여 해외게임사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그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개정안 제31조의2제7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내대리인이 지정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외게임사에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이 국내대리인 우선 지정 대상을 ‘해외게임사가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정 요건 확인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향후 시행령 제정 시에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개정안 제31조의2제3항은 해외게임사의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신설한 것으로, 해외 본사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이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제3항³⁾에서 개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교육·점검 등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과 유사한 입법례로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현행법상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시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대리인 수수료 규모 등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 제31조의2제7항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 절차를 거쳐 정보통신망을 정지·제한하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현행 제31조의2제7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한 게임물 등 법 위반에 따른 특정 게임물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중단을 명하도록 한 규정으로,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도 여기에 추가하려는 것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정안 제38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다시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정보통신서

3) 유사입법례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 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자

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특정 게임물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중단을 명하도록 하여 다소 복잡한 제재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경우 제재 절차>				
(기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추가) 지정의무 이행 시정명령 + 정보통신망 정지·제한에 관한 시정명령				
대상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있는 해외게임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	
절차	시정권고	⇒	시정명령	⇒
주관 부서	문체부		문체부	
			심의 및 시정권고	□
			게임위	
			정보통신망 정지·제한 시정명령	
			문체부	
근거법령	법 제38조 제10항		법 제38조 제7항 제3호	

2.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제재 추가

가. 개정안 요지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해당 위반 게임물의 정보통신망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7항제2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생략)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u>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 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⑦ ----- ----- ----- <u>다음</u>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u> ----- ----- ----- ----- ----- ----- ----- ----- ----- ----- -----

철차를 거쳐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⑧ · ⑨ (생 략)	-----. <u>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u> <u>해당하는 경우</u> <u>2. 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u> <u>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u> <u>르지 아니한 경우</u> ⑧ · ⑨ (현행과 같음)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⁴⁾ 제38조제9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시정명령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5조제1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한 자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을 명하기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정 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38조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 제재방안 (현행)

절차	시정요청 (20일)	⇒	시정권고 (7일)	⇒	시정명령 (7일)	⇒	[국내 게임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해외게임사는 구글·애플 등에서의 국내 유통 제한
담당	게임위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
법적성질	-		행정지도		행정처분		형사처벌

- 그러나 이러한 형사처벌 규정은 국내 게임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게임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가 어려운 실정임. 실제로 2024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적발 건수 1,625건 중 외국 게임사 위반이 1,082건(66.6%)을 차지하였으며, 플랫폼사 협조를 통한 유통제한 사례는 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⁵⁾
- 이에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게임물의 정보통신망 유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도 실효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다만,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제9항 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보다는 “제9항전단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게임물”로 규정하는 것이 문언상 명확하고 법체계상 정합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5)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위반한 해외 게임사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수용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76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20897호)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3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업무 2.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3. 제63조제1항에 따른 물품·서류 등 자료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는 등의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⑤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하지 아니한 자
전기통신 사업법 (제20677호)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제22조의7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

	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22조의7제1항에 따른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국내 연락 수단의 확보 2. 제22조의7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3. 제3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 4.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이행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부가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④ 국내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와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정보통신망법 (제20678호)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64조(자료의 제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이 법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2의2. 이용자 정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전파법 (제20481호)	제58조의13(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여야 한다. 1. 적합성평가의 신청 및 변경신청과 자기적합확인 공개에 관한 사항 2. 제71조의2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 또는 해당 기자재의 제출 ③ 국내대리인이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6. 제58조의13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허위로 지정한 경우
인공지능법 (제20676호)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3.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③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인공지능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

참고 2

협회, 민간업계 및 시민단체 의견

협회명	의견 주요내용
한국게임 산업협회	• (보완 입법 필요성 공감)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입법은 이용자 호보 및 국내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며, 실효성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 (다만, 확률형 아이템 제재 관련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적용범위 축소) 제38조제7항제2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해서는 국내게임사는 제외하고 해외게임사만 적용

① [게임 전문 법조계] (3.7., 3.20.)

- 연도별로 지정대상을 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유행주기가 빠른 게임물의 경우 분기별, 반기별 등 보다 지정주기가 짧을 필요가 있을지 검토
-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제재방안으로 “등급분류 거부”를 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으며, 법률개정을 한다하더라도 위헌성 소지가 큼

② [게임 전문 언론계] (3.7.)

- 게임이용자 피해 등 문제가 된 해외게임사가 지정대상 및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언론계 입장에서는 기사화할 수 밖에 없음
- 확률형 아이템 관련 시정명령에 대한 중국 언론 현지 보도 등 중국 현지에서도 해당 국가의 국내법 준수 등에 대한 자정 여론 형성되어, 해외게임사도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를 잘 이행하리라는 기대감이 있음

③ [해외 게임사] (3.7.)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사례에 따르면, 연락이 닿지 않았던 해외사업자의 경우 외교부 등을 통해 현지에서 연락하여 지정 의무를 이행함
- 본사와 협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정대상인 경우 미리 알려주길 부탁
- 시행령안이 나오면, 영문으로도 공유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④ [국내 게임사] (3.26.)

- 등급분류를 위한 제출서류에 대리인 지정 증빙서류 포함하는 방안 제시

⑤ [해외 게임사] (4.23.)

- 한국 정부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해 중국 게임사들에게도 소개하겠음

⑥ [게임 관련 협·단체] (5.15.)

- 모바일 기준 인기 게임물 상위 200위 이내 게임물은 매출액도 상당하며, 문제 게임물은 100~200위권에 있음. 적어도 이 범위에 대해서는 규제 필요
- 지정의무 미이행 해외게임사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한 제재 필요

⑦ [게임 관련 협·단체] (5.22.)

- 국내 게임사와의 역차별에 대한 법 감정을 고려하여 규제 대상 확대 요청
- ①연매출 1~3위 앱 마켓의 최근 3개월 간 이용자 수가 200위 이내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②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자, ③출시 이후 3개월 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 중 최근 3개월 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5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 등 다양한 의견 제시함

⑧ [해외 플랫폼사](6.5.)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원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법을 준수하는 대형 사업체가 아니라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는 중소형 사업체 중심 규제 필요

⑨ [해외 플랫폼사](6.5.)

-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관련하여 앱마켓 콘텐츠 제공업자(게임사)와의 계약관계, 본사와의 협의 필요 등을 이유로 매출액, 이용자 수 정보 제공 곤란 입장
- 자료제출 협조요구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기반할 필요